

李星湖와 藿憂錄(一)

鄭寅普

李星湖先生은 近古宏儒라 그의 著述이 浩瀚하여 卷으로 數百을 算하는데 詩文集外에

孟子疾書

大學疾書

小學疾書

中庸疾書

論語疾書

近思錄疾書

心經附註疾書

家禮疾書

易經疾書

書經疾書

詩經疾書

四七新編

百諺解

自卜編

喪威前後錄

觀物編

海東樂府

等諸書— 다 綜密, 廣該하여 後學의 津逮가 되는 名著인데 이밖에 또 星湖 僊說, 藿憂錄의 二書가 잇스니 僊說은 오히려 隨筆筭錄이나 藿憂錄은 □□를 이루은 鉅著이다. 先生의 自序를 보아도 胸懷의 感慨함을 스사로 견대지 못하는 一段輪血이 行墨간에 드러난다. 篇目を 나누어 보면 學制, 貢士, 科學, 用人, 諫官, 田制, 均田, 括田, 水利賦稅, 戶口, 糶糴, 兵制, 經費, 賑恤, 奴婢, 錢幣, 鑄錢, 朋黨의 各目を 말하 一家의 意見을 敷陳한 것 인데 그중에 均田

朋黨二篇만 드러 보아도 實로 未曾有의 卓見이라 아니 할 수 업나니, 대개 星湖以前名儒의 經濟에 關한 著述이 업슴이 아니로대 磻溪가튼 閔學으로도 井田의 周制를 固守하여 均産에 對한 說明이자못 拘隘한 곳이 잇슴으로 古制의 玩索에 잇서 偉論이 되나, 民生의 實效를 거두기에는 或齟齬됨이 업지 아니한대 星湖는 古書의 探討로부터 得力함보다 時艱, 民虞의 究察로조차 肯綮을 잡은이 이때 均田에 對하여 獨創的 見解가 있다. 筆者— 일즉이 朴燕巖의 限民名田議를 보고 그의 精見을 敬嘆하얏섯더니 및 朴貞蕤의 許生傳書後를 보매 重峰, 星湖에 지난다는 評語—잇슴으로 燕巖貞蕤師弟間에 星湖의 著述이 流被되엇슴을 알앗고, 또 그에 지난다 함으로써 極讚의 詞를 삼을진대 그에 對한 崇仰이 實로 열씨 아니함을 짐작하여 속으로 생각하기를 燕巖의 이만한 精嚴이 실로 民弊를 實求한데서 어더낸 것이 아마 星湖學風인가 보다 까지 하얏섯스나, 여기까지는 생각지 못하얏다. 限民名田議가 그대로 星湖의 原案에서 脫化한 것이다. 이제 均田一篇을 移載코자 한다.

井制, 既不可復, 故治終不古若也, 張子曰, 茲法之行, 悅之者衆, 是則恐不然, 悅者百而不悅者一, 一之力, 足以鉗百之口, 如何得行也, 富者, 田連阡陌, 而貧無立錫之土, 故富益富而貧益貧矣, 余見平民破産, 或有以無恒心者, 或有以稱貸滋益者, 凡官民之浚削, 閭里之豪橫, 皆足以蕩之也, 可破之端九, 而可保之勢一, 其不散而之四方者, 幸免矣, 家破而田存, 猶或復振, 破必至於無田, 自非陶朱之智, 何暇措其手足哉, 賣田者, 有故, 其始也, 或爲衣食帛肉, 其終也, 爲粥不繼, 或主之於奴, 劫奪之, 強之於弱, 勒責之, 於是, 田有窟, 而民日困, 故立國者, 率皆慮是, 如我東, 高麗元宗及我, 太祖大王, 定爲規制, 行受田法, 然多田者, 必多力, 夫豈恭俟損其有哉, 亦不終厥惠也, 漢末有限民名田法, 較諸井地, 差似易行, 亦梏於權貴而止焉, 蘇洵欲不責損田, 而禁其多占, 然田多過制, 既不可損, 貨積而多占者, 獨可禁以遏之耶, 余嘗竊思, 得一術, 不過平平耳, 然如得如意行之, 久而不廢則或庶幾有分寸之效也. (未完)